



제 1231호

2015년 4월 10일 금요일

선 람	기관의 장

공 고

○ 공 고 제2015- 62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불법주차 차량 견인 대행업체 모집 공고 2

고 시

○ 고 시 제2015- 52호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: 체육시설, 도로) 결정 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6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공 고

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-629호

불법주차 차량 견인대행업자 모집 공고

도로교통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, 인천광역시 남동구 견인대행 업체 관리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불법주차 차량 견인대행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 년 4 월 9 일

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

1. 사업의 종류 : 불법주차 차량 견인 대행업(보관, 반환업무는 남동구에서 직영)
2. 사업의 내용 : 주차위반으로 적발되어 구(區) 단속공무원이“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 자동차”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남동구 견인차량보관소까지 견인·인계하는 업무의 대행
3. 대행비용 :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규정된 금액을 구청장이 지급
4. 대행업체 : 심사평가표상 70점 이상 득점자(법인·단체 등)
5. 사업구역 : 남동구 전지역
6. 선정방법 :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[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] 심사로 선정
7. 심사기준 : 붙임1 [심사기준표]에 의함
8. 시행일정
 - 신청서 교부 및 접수기간 : 2015.4.9. ~ 4.28 18:00까지(20일간)
 - ※ 공휴일은 제외하며 우편 접수시 마감 당일 도착분에 한함.
 - 교부 및 접수장소 : 남동구청 교통행정과(별관 2층)
 - 심사일시 : 2015.4.29.(목) 15:00
 - ※ 시행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, 심사결과 개별통지

9. 구비서류

- 견인대행업 희망신청서 1부(붙임2)
- 사업계획서 1부
- 정관 및 등기부등본(법인에 한함) 각 1부
- 임원(주사무소)의 성명,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
- 견인차량 등록증 및 견인기사 재직증명서 등 심사표상 증빙자료
- ※ 자격요건 기 확보자는 견인차량·통신장비·인력 현황 첨부

10. 기타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견인대행법인 신청접수를 취소합니다.
- 구비서류의 각 증명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.
- 견인차량 및 견인기사 채용기준일은 공고일(2015.4.9.) 이전이며, 공고일 이후 등록 및 채용은 심사자료에 반영하지 않습니다.
- 사업등록(변경등록 포함)과 무선장치 허가(증설허가) 등 견인대행 사업에 필요한 절차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.
- 견인대행업자로 지정된 자(법인, 단체, 개인)은 남동구 지역의 불법주차 견인대행 사업을 할 수 있으며, 기타 견인대행 사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구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통행정과(032-453-2907)로 문의 바랍니다.

붙임1) **불법주정차 차량 견인 대행업체 심사 채점표**

연번	심사 목록	배 점	배 점 기 준 〔배점 기준일은 공고일(2015.4.9) 현재임〕	심사위원 점수		
				업체1	업체2	업체3
1	대행업체 주사무소 소재지	15점	남동구 관내 소재			
		10점	남동구를 제외한 인천광역시 소재			
		7점	인천광역시 관외 소재			
2	견인차량 보유대수 (대행업체 명의)	15점	견인차량 3대(5톤 이상 1대 포함) 이상 보유			
		10점	견인차량 2대(5톤 이상 1대 포함) 이상 보유			
		5점	견인차량 1대 보유			
3	견인기사 고용인원	15점	견인기사 3명 이상			
		10점	견인기사 2명 이상			
		5점	견인기사 1명 이상			
4	견인기사 숙련도	20점	7년 이상 견인차 운전자 1명 이상			
		15점	5년 이상 7년 미만 견인차 운전자 1명 이상			
		10점	5년 이상 견인차 운전자 없음			
5	인천광역시 관내 불법 주차 견인 대행 실적	20점	7년 이상 견인대행업 수행 업체			
		15점	5년 이상 7년 미만 견인대행업 수행 업체			
		10점	5년 미만 견인대행업 수행 업체			
6	기 타 (5톤이상 견인차량 보유여부)	15점	5톤이상 대형 견인차 보유, 견인업무 대행계획 우수			
		10점	5톤이상 대형 견인차 미보유, 견인업무 대행계획 우수			
		5점	5톤이상 대형 견인차 미보유, 견인업무 대행계획 보통 이하			
합 계						

2015. 4. 29

심사위원 소속(직위) :

성 명

(서명)

붙임2)

견인대행업 희망신청서

신청인	법인 또는 사무소명칭				
	소재지				
	대표자	성명		주민등록번호	
		주소			
대행 능력	견인차대수				
	견인기사수				
비고					

상기 본인은 불법주차 차량 견인업무 대행업을 희망코자 신청합니다.

2015년 일 일

신청인 : (인)

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

[구비서류]

1. 정관 및 등기부등본
2. 임원 및 종사자의 성명, 주소 등이 기재된 서류
3. 견인차량 등록원부 및 견인기사 재직증명서 등

고 시

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5-52호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: 체육시설, 도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: 체육시설, 도로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(☎453-2952), 문화체육과(☎453-2158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15. 4. 10.

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

1. 결정(변경) 취지 :

-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2조제6호 가, 라목에 해당하는도시관리 계획(도시계획시설 : 체육시설, 도로)의 결정(변경) 사항임.

2.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) 결정 조서

1) 공공·문화체육시설

- 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) 결정 조서

구분	시설명	위치	면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체육시설	인천, 남동구 남촌동 510-8번지 일원	-	증) 32,975	32,975	-	

○ 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) 결정 사유서

구분	시설명	결정내용	결정사유
신설	체육시설	○ 위치 : 남동구 남촌동 510-8번지 일원 ○ 면적 : 체육시설 신설(32,975㎡)	남동구의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 수요에 부응하며, 지역 주민의 여가선용 및 생활 체육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체육시설 신설

2) 교통시설

○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 조서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 지	최초 결정 일	비고
	등급	류 별	번 호	폭 원(m)								
신설	소로	3	30	6	국지도로	127	남촌동 510-8	대로 3-180	일반도로	-	-	

○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-	소로 3-30	(신설) - L=127m, 폭원 6m	남촌동 518-8번지 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진입도로 신설

3. 지형(결정)도면 : “별 첨”(게재생략)